韓國漁業共同體의 成立과 存立樣態에 관한 調査硏究

——漁村契를 中心으로——

朴 光 淳
(全南大學校 商科大學·助敎授)

차 례

Ⅰ. 漁業共同體의 發展
1. 韓民族의 水界開發과 漁業共動體의 成立
1) 韓民族의 水界開發
2) 韓國에 있어서의 漁業共合體의 成立
2. 漁業共同體의 存立形態
—黑山島의 미역 共同採藻制의 경우—
1) 黑山島의 位置 및 略史
2) 黑山島의 經濟構造
3) 黑山島의 漁業共同體의 經營形態(20輯)
3. 漁業共同體의 變質
——海苔養殖業의 경우——
4. 漁業共同體의 分解
——特種漁業의 경우——
Ⅱ. 漁業共同體의 現存樣態
——漁村契의 實態와 機能——
1. 漁村契의 實態
2. 漁村契의 機能
要約과 結言

Ⅰ. 漁業共同體의 發展

1. 韓民族의 水界開發과 漁業共同體의 成立

1) 韓民族의 水界開發

人類에 의한 水界의 開發利用은 人類의 死史와 함께 오랜 것임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先史時代의 韓民族들도 그들이 韓半島에 生活을 營爲하기 시작한 때부터 漁業을 主要한 하나의 生業으로 삼어 왔었다는 것은 이미 考古學的으로 考證된 바와같다. 種族的으로 보아 아세아北方系의 種族中 Tungus 種族群에 屬한다고 하는 우리 民族이 大陸北方에서 東進하여 韓半島에 들어 오게 된 時期는 新石器時代라 보고 있거니와[1] 우리나라 石器時代에는 漁撈를 主要한 生業으로 삼던 櫛文土器人과 原始農耕을 生活의 基柢로 삼던 無文土器人과 의

1) 李丙燾 金載元, 「韓國史, 古代篇」(震檀學會) 4面 參照.

두가지 文化를 區別할 수 있다.[2] 前者는 海岸 또는 河畔에 자리잡고 主로 漁撈에 從事하면서 貝塚을 爲主로 한 低地遺蹟을 남겨 놓고 있는바 이는 오늘날 先史時代의 漁業을 究明하는데 좋은 考古學的 資料가 되고 있는 것이다.

反面 이 무렵의 漁業의 樣相을 짐작할 수 있는 文獻的 資料가 없어 유감스러우나 조금만 時代를 내려와 原始部族國家時代에 오면 片貌나마 우리 祖上의 漁業을 짐작케 하는 文獻이 散見되는데 이를테면 「三國志」 魏志와 「後漢書」의 東夷傳 濊條에는 各各 「其海出班魚皮 土地饒文豹 又出果下馬 漢桓時獻之」 「海出班魚 使來品獻之」의 記錄이 보이고 「海東繹史」에는 後漢書를 引用하여 「濊海出班魚 使來獻之(後漢書○按班魚俗名슈됴긔)」[3] 「濊使來獻檀弓果下馬班魚(同上○謹按三國志桓帝時來獻)」[4]라 記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班魚또는 斑魚는 鰐魚와 함께 海豹를 가리키는 것인데 濊, 특히 東濊에서는 이러한 海豹를 捕獲하여 後漢의 桓帝時에 여러차례 漢나라에 바쳤던 것이다. 東濊는 지금의 永興 文川 德源 安邊등지를 中心으로 하고 있었던 點으로 보아 當時 永興灣一帶에선 海豹가 많이 捕獲된 것같다. 沃沮는 當時로선 比較的 漁業이 發達한 國家인바 「三國志」에는 「國小迫旅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 爲使者 使相主領 又便大加 統責其租賦 貊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中略) 其土地肥美 背土向海 宜五穀 善田種 (中略) 虞志言 國人嘗乘船捕魚 遭風見吹數十日 東得一島」[5]라 記錄하여 負溫및 海中食物을 高句麗에 貢納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거니와 이로 미루어 보아 沃沮는 漁業과 함께 主要한 生業으로 삼고 있었던 것같다.

한便 韓族으로 構成된 南部의 部族國家에선 地理的 惠擇을 입어 漁業이 크게 發展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三韓의 漁業에 관한 直接的인 記錄은 찾을 수 없으나 「其男子時時有文身」[6] 「南界近倭 亦有文身者」[7]와 같은 記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三韓種族에는 海洋民族이 混合되어 있었음을 볼 때 必竟 그들의 活發한 海洋進出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바 當時 이미 濟州島에서는 造船術과 航海術이 제법 發達하여 濟州島로부터 馬韓으로 乘船來往하면서 貿易을 했다고 하는 事實이 이를 反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여기에서 三國以後의 漁業에 관하여 仔細히 다룰 必要도 없으며 또한 그러한 紙面도 없으려니와 高句麗는 山이 많고 골이 깊은 地理的 條件때문에 三國中 漁業이 뒤떨어졌으나 半島의 西南海岸의 好漁場을 차지한 百濟는 그들의 古代國家를 完成한 4C 中葉(近肖古王 以後)부터는 특히 漁業의 發展을 보여 그 所產物은 中國과의 좋은 朝貢貿易品이 되었음은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條의 「十八年遣使朝魏 (中略) 所獻錦布海物雖不悉達明卿至心 今賜雜物如別」(三國史記第2.百濟本記第3.)에서 알 수 있다. 新羅 特히 統一期에는 그 領土의 三面이 水界資源이 豊富한 바다로 둘러 싸여 있으므로 漁業이 盛行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바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事實은 當時에 있어서 對 中國, 對 日本과의 活發한 海上交通과 交易相이라 하겠다.

要컨데 三國時代의 漁業에서 눈에 띄는 點은 稻作의 普及과 더불어 藥網이 생겨 網漁業의 發達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事實이다. 高麗時代의 漁業을 가장 잘 傳해 주는 史料는 高麗圖經인데 그에 의하면 漁業은 農業에 다음 가는 重要한 產業으로서 이미 이 時期에는

2) 李丙燾 金載元, 「韓國史 古代篇」 44面 參考.
3) 韓致淵, 「海東繹史」 卷第27. 物產志=魚類.
4) 同上卷, 第33 交聘志 一朝貢一.
5) 三國志 魏志, 東沃沮 東夷傳.
6) 同上.
7) 後漢書 東夷傳.

그後에 보여지는 거의 各種漁業이 널리 普及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高麗에선 各種 沮害要因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漁業의 發達을 보인 까닭은 첫째로 高麗는 水產資源이 豊富한 半島의 西南東海岸의 漁場을 지니고 있었다는 點, 둘째로 高麗 太祖의 創業이 海上權掌握에서 비롯했으며 그後 繼續된 海上活動, 이를테면 蒙古軍 侵入과 遷都 三別抄亂 魚蒙聯合軍의 東征등으로 造船術이 크게 發展했다는 點등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高麗時代에는 그後 李朝를 거쳐 近代化의 入口에 들어서기 까지 韓國漁業이 지니고 있던 技術水準과 漁業制度를 一應 갖추게 된 듯하다.

以上과 같이 韓半島에 定住한 우리 祖先들은 일찍부터 바다에 進出하였었다. 그러면 以下 지금까지 判明된 資料들에 의해서 究明된 古代의 漁業에 대하여 먼저 그 漁獲物, 漁具, 漁法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선 그러한 漁業의 制度 乃至 經營形態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漁獲物의 種類를 보면 現在까지 發堀된 貝塚의 出土品中에서 가장 많은 水產物은 貝類이며 貝類中에서 가장 많은 것은 굴, 百合등이다. 貝類의 種類가 많은 곳으로 有名한 慶尙南道의 金海貝塚의 例를 들어보면 지금으로부터 40餘年前에 出土된 貝殼을 當時의 京都大學 理學部 助手 黑田德米가 감정한 結果 貝類 34種(그중 淡水性貝類 5種)과 그밖에 甲殼類 3種을 確認할 수 있었는데 貝類中에는 백합및 굴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개중에는 굴의 길이가 一尺에 達하는 참굴이 있었고 대합은 直徑 四寸이 넘는 大形의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8] 黑田氏에 의하면 이들 貝類는 오늘날에도 南韓에 一般的으로 存在하는 것이라 한다. 한便 1931年 京城帝大 橫山三郎敎授에 依한 釜山 影島 東三洞 貝塚調査報告에도 貝利器(食刀) 貝輪 裝身用貝具등이 報告되어 있다.

漁類는 東三洞 貝塚에서 뼈의 크기로 미루어 보아 40乃至58cm로 推定되는 도미의 뼈와 상어類의 뼈와 같은 軟骨類의 뼈가 發見되었고[9] 상어뼈의 斷片은 金海貝塚中에서도 發見되어 있다.

漁類外에 성게(海膽)의 棘針이 平安南道의 古蹟調査報告에 나타나 있고[10] 金海貝塚에서도 發見되었다. 특히 注目할 만한 事實은 패총의 出土品中에서 海獸類가 發見되었다는 것이다. 前記 東三洞의 패총에서는 커다란 鯨骨이 發見되어 마을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고래뼈로 만들어진 방망이와 접시도 나타났다고 한다[11]. 그리고 海藻類도 當時 이미 採取利用했을 것임을 推斷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쉬이 腐敗하여져버리기 때문에 遺存하는 것이 없을 뿐인 것이다.

海藻類는 처음 海邊에 浮着한 것을 試食한 後 退潮에 나가 採取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와같이 現在 遺存하는 當時의 漁獲物은 오늘날과 같이 魚類, 貝類 其他 水產動植物등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그중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은 亦是 貝類이다. 貝類는 比重的 保存性이 크기 때문에 많이 遺存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보다도 當時의 幼稚한 漁具와 低度한 漁撈技術로서도 貝類는 쉽게 捕獲할 수 있었다는 것과 또는 貝類는 大體로 肉質이 柔軟하고 榮養分도 豊富한 것이므로 當時 사람들은 즐겨 이를 捕獲하여 嗜食했던 것에 基因와 하는 것이다. 低地遺蹟이 主로 패총의 形態로 나타난 것도 이때문이라 하겠다. 周知하는바 같이 新石器時代는 地史學的으로는 現地에 屬하므로 大體로 오늘날과 같은 氣候가 되어 있었으며 陸地와 海洋 植物界와 動物界도 大體로 지금과 같아 人類生活에 대한 自然條件은 오

8) 朝鮮總督府「大正九年度 古蹟調査報告 第一冊」——金海貝塚發堀調査報告—— 41~42面 參考.
9) 金東鎬,「釜山地方의 貝塚」「港都釜山」第一號 所收 505面 參考.
10) 平安南道 黃海道古蹟調査報告(鳥居委員提出)「朝鮮總督府古蹟調査報告」大正五年度 790面 參照.
11) 金東鎬「前揭論文」502~506面 參考.

늘날과 비슷했다고 하니[12] 韓半島沿岸및 內水面에서 棲息하고 있던 水產物의 種類는 오늘날과 비슷했을 것이며 다만 그 賦存量만이 豊富했을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先史時代에 捕獲된 水產物의 種類는 패총에서 發見되는대로 오늘날과 큰 다름이 없을 것으로 推斷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水產動植物을 如何한 方法으로 採捕되었을까? 貝塚의 其土品中 漁撈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것은 骨鈎針과 錘石이다. 骨鈎針은 東三洞貝塚을 비롯하여 最近發堀된 貝塚에서도 發見되고 있는바와 같다. 錘石은 平安南道의 古蹟調査에서 나타난바와 같거니와 이는 幼稚하나마 當時에 이미 鈎漁業이 行해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平安道(특히 大同江畔)및 黃海道의 有史以前遺蹟에서는 여러곳에서 石製 또는 土製의 漁網錘가 發堀되었으며 江原道 通川의 遺蹟에서는 한곳에서 많은 漁網의 錘石이 모여 있는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13] 이러한 網錘石은 現今도 아시아의 東北方및 北美의 土人間에 使用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14] 이렇게 볼 때 亦是 網漁業도 鈎漁業과 함께 이루어 졌음을 反證하고 있다 하겠다. 網·鈎漁業以外에 우리들이 推斷할 수 있는 것은 徒手漁撈는 勿論 槍, 銛, 鏃, 弓矢, 漁梁등에 의한 漁業이다. 槍, 銛, 鏃등을 使用한 漁法을 이른바 刺突漁法이라 하는데 刺突漁法은 鈎漁法보다 앞서는 것으로 오늘날 北海道의 아이누族에서도 엿볼 수 있고 李朝末 咸鏡道에선 銛로 연어를 잡았었다고[15]하니, 이는 必是 原始時代 때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弓矢漁法은 오늘날에도 熱帶未開人들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漁法인바 南方未開人들의 社會는 原始社會가 化石化되다시피한 것을 勘案한다면 弓術에 長했던 우리 先民들에게 있어서 弓矢漁法의 採擇은 가히 不可能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漁梁漁業은 河川이나 內灣 또는 沿岸에 발(簾)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하는데 이 무렵에 바다에 漁梁을 設置하였는가의 與否는 推斷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河川에 간단한 발을 쳐서 淡水魚를 捕獲하는 것과 같은 漁法은 가장 原始的인 漁法의 하나라 할 수 있으므로 當時에 이미 널리 普及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沿岸에도 발 代身 돌로써 담을 쌓아 捕魚하는 石箭과 같은 것도 알려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가장 發達된 漁撈形態의 하나인 漁網漁業은 이미 그 錘石이 大同江邊의 遺蹟에서 發見되었다고 하거니와 그것이 網漁業으로까지 發展하기 위해서는 網의 材料의 發達과 깊은 關聯이 있을 것으로 推測되는바 우리나라에 綿網이 導入되기까진 가장 훌륭한 漁網이 藁網과 疏布등이었음을 생각할 때 稻作이 널리 普及되기 시작한 三國時代 以後에는 그런대로 網漁業도 發達하고 있었던 것 같다.

2) 韓國에 있어서의 漁業共同體의 成立

以上에서 우리는 漁業과 漁獲物을 中心으로 우리 先民들의 韓海開發相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와같은 漁業은 어떠한 社會·經濟的 制度下에서 어떠한 經營形態로 營爲되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發展되어 왔을까? 以下 이點에 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하거니와 이點이 바로 本稿의 基本課題임은 上述한 바와 같다.

첫째 原始社會에 있어서의 人類의 水界開發은 個人에 의해서 個別的으로 이루어 졌던가? 不然이면 어떤 協同體 乃至 團體에 의하여 有機的으로 이루어졌던가? 그러한 團體의 性格은 어떠 했는가? 둘째 그들이 開發한 水界 乃至 漁場은 어떻게 支配管理되었던가? 團體

12) 李丙燾 金載元, 「上揭書」 8面 參考.
13) 朝鮮總督府, 「平安南部, 黃海道, 古蹟調査報告」 大正五年度 769面 以下.
14) 朝鮮總督府, 「上揭報告書」.
15) 러시아大藏省, 「韓國誌」 26面 參考.

에 의한 共有로서 共同管理되었는가? 아니면 私的인 所有로서 個別的으로 利用 管理되었는가? 세째 萬一 協同體에 의해서 共同管理되었다고 한다면 그 共同利用과 管理, 바꾸어 말하면 共同經營의 內容은 어떠했는가? 하는 問題들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번 疑問 즉 個別的으로 營爲했나 不然이면 團體에 의하여 協同的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問題는 生產諸力의 發展度가 낮은 段階에 있어서의 勞動의 諸主體인 人間은 孤立된 人間의 微力함 때문에 勞動의 客體가 自然的인 性質을 띄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自然的 性質을 띄우는 「自然的 諸個人」(Natürliche Individuen)으로서 原生的인 血緣組織을 中心으로 하는 共同組織(Gemeinwesen)을 形成하여 自然(大地, Erde)에 대하여 集團的으로 일해왔었던 것이니 이點에 관하여 「資本論」의 著者도 「資本主義 以前의 諸社會에 있어서는 有用的 諸活動은 相互獨立的으로 私事로서 營爲되지 않고 社會的 分業은 共同組織으로 編制되며 따라서 거기에선 富는 直接的으로 社會化된다」고[16] 말하였음을 勘案한다면 거기에 解決의 열쇠가 있지않나 생각한다.

周知하는바와 같이 原始人은 孤立된 人間의 微力때문에 血緣關係를 中心으로 하는 集團을 이루어 살아 갔다고 하거니와 原始人이 이룬 集團을 血緣群團(民群, Herdenwesen)이라 한다. 群團은 生產力이 차츰 發展되고 相對的이나마 生活이 安定됨에 따라 人口가 增加하면 細胞의 分裂을 일으켜 多數의 同質의 群團을 만들어내고 이 두個 以上의 集團이 結合하여 氏族[種族(Stamm)→大氏族(Phratrie)→氏族(Gens, Clan, Sippe)→大家族→小家族]이 誕生한다. 氏族은 처음에는 母系中心의 것이었으나 金屬時代에 들어와 農耕生活의 確立과 함께 社會的 分業이 發達되고 이른바 婚姻關係가 對偶婚으로부터 一夫多妻制에로 옮아와서 父權이 確立된다고[17] 하는데 血緣群團으로부터 母權이 支配하던 時期까지의 原始共同組織을 原始共同態(Ursprüngliche Gemeinschaft)라 함도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L.H. Morgan의 이른바 「野蠻의 上段」(Oberstufe der Barberei)에 이르면 金屬이 生產用具로 採用되므로써 重要한 生業인 農耕이 男子의 分擔事로 옮아오고 그에 따라 父權이 차츰 强化되어 家父長制大家族(Patriarchalishe Hausgemeinschaft)이 確立되고 他便, 家畜, 裝飾品, 道具類등의 動產에서 비롯한 私有의 端緖的인 進行은 完全한 共有와 無階級을 基礎로한 原始共同態에 分裂의 素因을 차츰 마련하여 一部의 土地, 즉 Heredium(Hof und Wert)에 까지 擴大되어 이제 公有와 私有, 對外道德과 對內道德의 分裂등 二重性을 갖는 共同體(Gemeinde)에로 變質되어 간다.[18]

이와같은 共同體는 原始社會의 社會關係를 表徵하는 共同態의 崩壞以來 近代社會의 入口까지 줄곧 社會關係의 基盤을 이루는 基礎的 生產關係가 되거니와 共同體는 어디까지나 原始共同態에서 繼承한 共同性을 基軸이요 本質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近代以前의 諸社會에서는 生產力의 發展이 있다손치더라도 產業革命期에 이르기까진 아직도 諸個人이 獨自的으로 諸生產을 營爲할 수 있을만큼 生產力이 發達되지 못하기 때문에 共同組織은 維持되지 않으면 아니 되며 그렇기 위해서는 諸個人의 私的活動의 恣意性은 共同體全體에 의하여 規制되지 않으면 아니되었던 것이니 共同體를 構成하는 諸個人(=家父長制家族)은 어디까지나 非合理的이요 傳統的인 經濟外的 强制(Ausserökonomischer Zwang)에 基한 共同態規制를 받아가면서 全體에 의해서 共同態的으로 占取한 土地를 基盤으로 하여 그 안에서 形成

16) 大塚久雄, 「共同體の 基礎理論」 17~18面 參考.
17) L. H. Morgan, An Ancient Society, 1877.
18) 大塚久雄, 「上揭書」 3面 參考.

된 私的 占取地를 據點으로 하여 再生産을 營爲하므로써 需要를 充足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土地란 人類에 의하여 占取된 大地(Erde), 乃至 그 諸斷片인데 水界를 包含하여 人間에게 있어서 그들의 獨特한 生活過程인 生産活動의 展開를 위한 自然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前近代社會에 있어서의 「土地」는 近代社會에 있어서의 富의 原基的 形態인 「商品」과 같이 物質的 基礎로서 그것이 갖는 經濟的 意味는 1) 生活資料의 天與의 貯藏庫, 2) 原始生産手段의 天然의 寶庫, 3) 天與의 勞動場所, 4) 武器庫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富의 包括的인 寶庫」인 것이다[19]. 따라서 우리들이 問題로 하는 水界, 乃至 漁場이 여기 包含됨은 勿論이거니와 一般的으로 土地란 그 利用形態에 따라 耕地, 林野, 漁場으로 分類되며 따라서 우리 民法도 漁場을 準土地視하고 漁場에 의한 物權은 土地에 관한 것을 準用토록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20]

以上이 大體로 共同體가 그 自身을 再生産해가는 過程이었다. 이렇게 볼 때 原始社會를 包含하는 前近代社會에 있어서의 漁業의 經營이 集團에 의하여 有機的으로 營爲되었을 것임은 可히 推斷하기에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事實을 證據할만한 史實들은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前近代韓國社會에 있어서는 어떠하였을까? 이 問題는 마땅히 前近代社會에 있어서의 韓國社會의 基本的 社會關係가 前述한바와 같은 共同體를 이루어 왔었느냐 하는데 歸結될 것 같다.

一般的으로 우리社會의 經濟的 發展은 全歷史過程을 通하여 매우 緩慢하였고 또한 各段階를 個別的으로 考察하드라도 그곳에는 單一한 生産關係가 壓倒的으로 明瞭하게 나타나지 않은채 항상 낡은 社會關係가 重疊 또는 結附되어 있다는 點이 特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特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經濟的 發展은 이른바 「亞細亞的 停滯性」을 띠우고 있다고 흔히 말하고 있거니와 바꿔말하면 原始共同態(Ursprüngliche Gemeinschaft)의 發展形態로서의 村落共同體(Dorfgemeinde)의 遺制가 古代社會에 있어선 勿論 中世封建社會에 있어서도 그리고 近代化過程에 들어선 오늘날에 있어서도 너무나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는데 많은 學者들의 意見은 모아졌고[21] 그러한 事實을 立證하기 위하여 저마다 자기 視角에서 理論을 展開해 오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 한가지 注意하여야 할 事實은 우리 前近代社會의 共同體的 性格 그 自體를 究明하려고 하는 論考는 筆者의 寡聞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극히 少數에 不過하며 大部分의 論考는 周邊問題를 다루는 사이에 그러한 論斷을 내리고 있다는 點이다.[22] 우리들은 여기에서 그러한 理論을 하나 하나 紹介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러할 必要도 느끼지 않고 있거니와 主要한 理論 몇가지의 槪要만을 들어 본다면 아래와 같다.

白南雲氏는 일찌기 1933年 9月에 發表한 「朝鮮社會經濟史」의 第八章 原始氏族共同體의 項에서 「우리들은 몰간 乃至 엥겔스의 功績을 通해서 原始朝鮮의 氏族制를 明瞭하게 理解할 수가 있다. 立論의 順序로서 가장 典型的인 이로콰이人의 氏族制에 있어서의 諸特徵을 擧示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나, 形式的인 論陣을 펴기 보다도 直載的으로 比較分析하므로써 우리 原始氏族制의 全貌를 展開시킬 수 있을것」[23] 이라고 말한뒤 原始氏族共同體를

19) 大塚久雄, 「上揭書」 13~15面 參考.
20) 新民法, 185條 및 水産業法 第24條 參照.
21)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硏究」 75~76面 參考.
22) 筆者가 알기론 白氏와 李氏 以外에는 權丙卓氏의 「三韓經濟社會의 共同體的 性格 ——特히 아시아的 共同體및 生産樣式과 關聯하여——」(「韓國經濟學會」「經濟硏究」 第13輯)및 金永喆氏의 「韓國農村의 社會倫理」「亞細亞」 第1卷 第2號만이 問題를 直接的으로 다루고 있는 듯하다. 筆者의 과문한 탓이길 바란다.
23)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1933年 104~105面 參考.

立證할 만한 特徵으로서 1)田系氏族制, 2)氏族權을 隨伴한 氏族名, 3)酋長의 選擧制, 4)軍長制, 5)氏族外의 結婚, 6)酋長을 罷免하는 權利, 7)氏族評議會, 8)共同墓地, 9)共同의 宗敎的祭典, 10)氏族員의 相互扶助[24]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白氏의 이러한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原始共同體의 存在의 立證은 이미 批判되고 있는 바와 같이[25] 몰간 및 엥겔스의 公式을 그대로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이른바 原始共同體의 存在를 合理化하기 위하여 史實을 歪曲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날 硏究史의 水準으로서도 韓國 및 中國의 文獻을 通해서 韓國에 있어서의 原始共同體의 社會·經濟的 狀態의 直接的 證明은 不可能하다는 것이 定說이 되어 있는 것이다. 白氏의 公式主義를 批判하면서 스스로도 公式主義에 빠지고 있는 李淸源氏는 1936年에 내놓은 「朝鮮社會史讀本」의 第一章 第四節에서 原始社會의 構成狀態를 論하면서 1)그들은 酋長을 選出한다. 2)氏族은 酋長 및 軍長을 隨意로 罷免한다. 3)어떤 氏族일지라도 氏族內에 있어서 結婚할 수 없다. 4)死亡者의 財産은 餘餘의 氏族員에게 歸屬하였다. 5)氏族員은 共同扶助를 할 權利와 義務를 가졌다. 6)氏族은 다른 氏族으로부터 養子를 맞이하고 이를 全種族에 吸收할 수 있었다. 7)共同의 宗敎的 祭典이 있었다. 8)氏族은 共同墓地를 가졌다. 9)氏族은 評議會를 가졌다. 10)氏族은 태어났을 때부터 氏族名을 가지며 氏族權을 가지고 있었다. 11)獨自的인 地域과 獨自的인 名稱을 가지고 있었다. 12) 2,3의 種族에는 高級酋長이 있었다[26]는 諸特徵을 들어 原始社會의 共同體的 性格을 間接的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吟味는 이미 살펴본바 있는 白氏의 경우와 大同小異하므로 割愛하기로 하겠거니와 그의 理論은 F. 엥겔스의 「家族私有財産및 國家의 起源」의 第三章 ü이로쿼이人의 氏族」에 있는 諸特徵을 模倣한 것이며, 그 公式主義도 白氏보다 덜 할 것은 「조금도 없다. 白氏와 李氏가 史實을 歪曲하면서 까지 原始共同體의 存立을 强要하려고 한 것은 첫째로 敎條的 公式主義에 빠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들의 學問의 態度에도 그 理由의 一端이 있었지마는 그보다도 重要한 理由는 그들의 「共同體」에 대한 認識의 錯誤에 起因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共同體에 관한 限 Markgenossenschaft Theorie 만을 古典學說이라 錯覺한 그들은 共同體라고 하면 으레 原始共同體만이 存在했던 것으로 認識함으로써 이미 古代的 段階의 「夫餘」나 「三韓社會」를 論함에 있어서 「舊夫餘」의 事實을 가지고 說明하려 드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이른바 Below의 「有名한 學說의 短命」[27] 以來 提起된 論爭에서 비롯하여 늦어도 第一次 世界大戰以後에는 共同體理論이 整理되어 原始共同態(Ursprngliche Gemeinschaft)와 그를 繼承한 共同體(Gemeinde)의 諸類型의 存立이 K.Marx 自身에 의해서도 立論되고 있음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誤謬를 犯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다.

古代社會의 共同體的 性格을 直接的으로 論한 이는 嶺南大學의 權丙卓氏를 들 수 있을 것이다. 權氏는 1965年에 發表한 「三韓經濟社會의 共同體的性格——特히 Asia 的 共同體및 生産樣式과 關聯하여——」라는 論文에서 우리 三韓社會를 Asia 的 共同體의 末期, 다시 말하면 「總體的 奴隸制 Allgemeine Sklaverei 의 繼起點 Nacheinanderspunkt 에 該當하는 社會라 하여 三韓社會는 各各 種族同盟(=種族共同體)을 形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고[28] 보고 그것을 立證하기 위하여 첫째로 後漢書 東夷傳 韓條에 나오는 「馬韓在

24) 白南雲, 上揭書 105~117面 參考.
25) 金三守, 「契의 硏究」 그 過去와 現在 및 「韓國社會經濟史硏究」 64~66面 參考.
26) 李淸源 「韓國社會史 讀本」 1936年 18~28面.
27) G.V. Below, Das Kurze Leben einer viel genannten Theorie, 1903.
28) 權丙卓, 上揭論文 5面 參考.

西 有五千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有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의 國의 크기를 檢討하여 「三國志」의 「馬韓在西……凡五十餘國……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29]라는 句節을 引用하여 「國」이란 古代의 統一國家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말하자면 血緣的 乃至 種族的인 紐帶關係下에서 맺어진 共同體임에 틀림없을 것이라[30]고 하고 이러한 事實을 論證하기 위하여 그 共同體의 構成單位인 「家」 또는 「戶」를 規定하여 近代的 意味의 單一家族이 아니고 血緣的 紐帶에 의하여 結合되어 있는 家父長制大家族으로서 家父長制의 兄弟姉妹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直系傍系의 親族까지도 包含하는 共同世帶的 大家族의 「家」라고 말하고 있다.

要컨대 權氏는 그 스스로 애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극히 制限된 史料를 通하여 拙劣한 方法으로나마 三韓經濟社會의 共同體的 性格을 究明」[31]하려고 한 努力은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나 「制限된 史料」때문인 지 三韓社會의 共同體的 性格이 크게 浮刻되지 않음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는 「土地」라고 하는 共同體가 存立하는 物質的 基礎의 制度와 그 變遷을 硏究하는 가운데 우리 前近代社會의 諸共同體의 모습을 말해주는 이가 있다.

淑明女大의 姜晋哲敎授가 그 분 이다. 姜敎授는 「韓國土地制度史」上(高大民族文化硏究所 韓國文化史大系Ⅱ 所收)에서 「人類의 歷史는 어느 氏族 어느 地域을 莫論하고 하나의 例外도 없이 다 原始共同體社會에서 出發하였다. 이 原始共同體에 있어 土地가 生產을 支配하는 基本形態였음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거니와 그 土地에 대한 所有關係는 共同體的 所有에 立脚한 것이었다. 氏族이 占住하는 一定한 土地는 氏族構成員全體의 所有에 屬하였으며 아직 氏族構成員各自의 個別的 所有는 나타나지 못하였다. 土地의 耕作은 氏族構成員의 共同勞動에 관한 것이었고 生產된 收獲은 社會化 즉 平等 分配되었다」[32]고 前提한 後, 統一期 新羅以前의 土地制度를 論하는 자리에서 「過去에 오랫동안 存續한 「共同體」秩序의 遺制로 말미암아 土地에 대한 그들 農民의 個別的 保有에는 多分히 「共同體」的 殘滓가 남아 있었을 것이며 말하자면 「共同體」的 紐帶의 基礎위에서 土地의 個別的 保有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新羅의 村落은 後期에 내려와서도 극히 血緣的인 要素가 濃厚한 것으로 推測이 되거니와 이러한 要素는 처음에 있어서는 훨씬 더 强度가 높았을 것이며 또 이 條件이 「共同體的」 關係의 한 基盤이 되었을 것」[33]이라고 말하므로써 三國時代의 土地所有의 共同體的 性格을 指摘하고 있다. 또한 姜敎授는 中央集權的인 封建體制를 完成한 高麗朝는 開國以來 여러차례의 田制改革을 通해 그들 田制의 集約이라 할 수 있는 田柴科體制下에서도 「農民들에 대해서는 在來의 耕作地 保有를 그대로 認定하여 그들이 保有한 土地를 國家가 주었다는 「給田」이라는 形式을 通하여 職役을 課하였을 뿐이며 何等의 새로운 措置를 取한 痕跡이 보이지 않는다 (中略)……「高麗前期의 社會가 共同體的인 集團的 性格이 濃厚한 社會였다는 것은 이미 다른 機會에 말한바가 있거니와 例를 들면 農民들의 土地支配關係와 軍役을 包含한 收取體係一般이 다 그러한 것이었다」[34] 「當時의 家族은 이와같은 大家族的인 것이었다. 이러한 集團的 '共同體'的 環境안에서 生活하는 農民을 國家는 集團的으

29) 三國志, 魏志 東夷傳 馬韓條.
30) 權丙卓, 上揭論文, 6面 參考.
31) 權丙卓, 上揭論文, 13面 參考.
32) 姜晋哲, 「韓國土地制度史」上 (高大民族文化硏究所 「韓國文化史Ⅰ」), 1160面 參考.
33) 姜晋哲, 上揭書, 1171~1172面 參考.
34) 姜晋哲, 上揭書, 1323面 參考.

로 把握하여 苛酷한 收取를 强行하였다[35]고 말하므로써 高麗朝에 들어와선 이미 共同體가 封建官僚에 의하여 하나의 共同納稅機構로도 活用되고 있음을 비추고 있다.

또한 金永喆교수는 그의 「韓國農村의 社會倫理」에서 水利共同性, 共同勞動, 入會地 및 宗中의 財產과 祖祭등, 諸般 共同性을 들어 韓國의 村落共同體와 宗族共同體를 확인하고 있다.[36]

위에 든 몇분은 우리 原始社會를 包含하는 前近代社會에 있어서의 共同體的 性格을 直接的으로 把握할려고 한 사람들이었다. 한便 보다 많은 學者들은 우리 韓國社會에 固有한 團體로서 重要한 意義를 갖는 「契」의 性格究明을 試圖하는 가운데 우리 社會의 共同體的 特徵을 間接的으로 밝히고 있다. 以下 代表的 學說 몇가지를 吟味해 보기로 하자. 從來 契에 관한 學說은 그 重要한 內容에 따라 形態的으로 分類한다면 總 19說을 헤아릴 수 있다[37]고 하고니와 그들의 大部分은 契를 韓國에 있어서의 原始共同體 乃至 原始村落共同體的 生產關係 혹은 自治團體로 보고 있다 하겠다. 解放後에 發表된 契에 관한 論考中 比較的 整理된 說(?)을 펴고 있는 金柄夏氏는 1958年 7月에 發表한 그의 碩士論文 「契의 史的 考察」에서 「契가 原始共同社會에서 發生하였고 原始共同體의 長久한 遺制에서 應變=成長하여 왔으니 이러한 協同體的 社會生活의 歷史的 土臺위에서 生成한 契의 硏究는 韓國社會의 發展이 어떠한 特質을 가지고 있는가를 提示하는 것이며 따라서 契의 發生過程을 通해서 韓國社會制度의 總發展史를 大觀할 수 있다」[38] 「契가 上古以來의 村落共同體에서 發生하여 成長하여 왔다는 史實과 그 發達=普及의 主要한 社會的 經濟的 動機가 集團的 封建社會 內部에 있어서의 苛斂誅求와 庶民層의 貧困化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歷史的 特性임과 同時에 停滯性 乃至 後進性을 胎盤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39] 「要컨데 血緣團體는 外部에 대하여 戰鬪團體임과 同時에 內部에 대하여는 宗敎團體로서 同苦同樂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共同生活의 表現은 여러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지마는 共同耕作 共同遊興 共同食飮등은 그 重要한 部分이며 契는 실로 이러한 共同生活의 一種의 表現形態로써 시작되었을 것이다……換言하면 契의 母胎는 原始的 共同產業關係 그것이고 그 表現形態는 共同耕作, 共同遊興 共同食飮등이었다」[40]고 말하므로써 우리 社會의 共同體的 特性을 反證하고 있다.

한편 金氏와 함께 解放後의 契의 硏究中 가장 體系的이고 同時에 유익한 學說을 提示한 바 있는 淑明女子大學校의 金三守敎授는 그의 契에 관한 많은 論文을 通해서 契의 構成的 團體槪念의 規定을 試圖하고 있거니와 金敎授는 共同體(Gemernde)의 새로운 理論에 立脚하여 共同體의 古有의 二元性과 契의 自治的 機能과 殖利的 機能이라는 二元的 性格을 綜合하여 契 自體를 韓國의 共同體로 보고 있음을 周知하는바와 같다.

그는 말한다. 「契는 本源的으로 「ㅁ을」(村) 集團의 一般的 團體形態로서 大小의 會聚에 呼稱된 것으로 村落共同體=祭祀共同體=生產共同體에 一貫할 本來的인 共同體의 汎稱인 것이다. 村落共同體 밑에 民族神的, 農業生產의 穀靈的 信仰과의 合體로서 祭祀共同體의 一面(마지 및 굿)을 가지며 農業生產에 隨伴된 物的 享樂을 위한 (親睦的) 人間的 集團과 農業

35) 姜晋哲, 上揭書, 1324面 參考.
36) 金永喆, 「韓國農村의 社會倫理」(「亞細亞」 第1卷 第2號) 參考.
37) 金三守, 上揭書 59面 參考.
38) 金柄夏, 「契의 史的 考察」 中央大學校 經商學報, 第7輯所收, 58面 參考.
39) 金柄夏, 上揭論文, 60面 參考.
40) 金柄夏, 「契」項, 學園社刊 大百科辭典 所收 301面 參考.

生産 그 自體의 協同性 즉 共同勞動으로서의 單純協業을 위한 生産共同體가 그 重要한 內容이다. 나아가서 防衛共同體로서 leiturgisch(官府調達的)한 欲望充足, 또는 專制君主 밑에서의 leiturgie 體制의 擔當者로서의 地域自治體로서의 自然村落 그리고 統一新羅 以後 高麗朝에 걸쳐 强力化된 律令國家體制에서의 權力構造에 對應하는 關係下에서의 二面性, 즉 소위 土地所有關係로서 表面的으로 나타난 土地制度, 換言하면 土地政策을 通해서 內容的으로는 封建國家의 財源으로서의 Leiturgie 的 收租政策과 高利貸支配政策下에 特殊化된 共同體의 形態로 나타난다. 이 契가 「會」로서 高麗 李朝時代를 通하여 行政單位에서 村落共同體, 商業的 特權團體의 會聚(廛契), Leiturgie 的 手工業의 職人의 會聚(工匠契), 血緣的 會聚에 이르기 까지 그 多面性을 專制體制下에서 具現시켰던 것이다」.[41]

以上과 같이 그는 契는 宗敎的 經濟的 自治的 諸集團의 大小 會聚에 붙여 진 것으로서 村落共同體=祭祀共同體=生産共同體에 一貫한 共同體의 汎稱으로 보는 한편, 契의 成立을 高麗朝에 있어서의 封建體制의 轉換에서 오는 高利性에 對應하는 農民들의 最少의 自己防衛와 救濟策으로서 지금까지의 自治機能만을 갖던 共同體가 殖利性을 갖춘 共同體에로 탈바꿈한 것이 바로 契라 보고 있는 것이다.[42] 아무튼 金敎授도 契=共同體說을 主張하는 가운데서 韓國社會의 共同體的 性格을 누구보다 잘 論證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이 當面의 論議의 對象인 漁村의 共同體的 性格에 관해서도 推斷하기에 어렵지 않으니 이에 관하여 釜山水産大學의 張設鎭敎授는 「契는 韓國 古來의 團體(共同體)로서 오늘의 協同組合과 비슷한 團體이다. 漁業에 關係되는 契로서는 漁夫契 漁網契 漁船契 漁業契, 霍契 船具契 船村契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漁業에 관한 各種의 契가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는가 이 點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히 밝혀진 것이 없다. 이제 밝혀진 文獻으로서는 李太王 2年(1865년)에 編纂된 「六典條例」의 「負幣」項에서 漁夫契人이라 하는 名稱이 나오고, 또한 契의 機能形成이 高麗中期라하는 說(金三守敎授)등으로 보아 李朝以前 곧 高麗末이나 혹은 그 以前에 이미 漁業에 관한 契가 發生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43]고 하여 漁業과 漁村에 있어서의 契를 中心으로 하는 共同體의 存立을 主張하고 있다.

以上에서 우리들은 다소 지루한 감은 없지 않으나 여러 學者들의 論說을 빌려 韓國社會의 共同體的 特徵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角度를 달리하여 이 點을 더욱 補完해 보기로 하겠다. 一般的으로 韓國을 包含하는 東洋社會에 있어서는 그들의 主要한 生業이 水田農耕이오 水田農耕에 있어서는 물의 問題, 즉 治水와 利水는 항상 個人의 能力을 超越하는 것이어서 다른 어느 社會에 있어서 보다도 協業을 通한 共同勞動과 나아가선 生活의 共同化가 强要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村落은 일찍부터 무리(群)을 이루어 하나의 局地的 小宇宙 乃至는 하나의 작은 國家로서 自己完了的인 性格을 띠우고 왔음은 이미 위에서 누누히 살펴 온 바이지만 다음 몇가지 事實도 아울러 이를 立證해 주고 있다 하겠다. 첫째 村落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 「마을」「모을」 혹은 「말」「몰」은 그 語源이 日本의 「おら」와 같이 群聚의 意에서 나왔다는 事實이다. 李丙燾博士에 의하면 「國語로 村落을 "마을" "모을" 혹은 "말" "몰" 또 혹은 "마슬(슬)"이라고도 하거니와 ("마슬"은 "마을"의 變音)古代語에 있어서도 大差가 없었음은 梁書(諸夷傳)新羅傳에 「其俗乎城曰 健牟羅」라 하였음으로써 알 수 있으니 健牟羅는 즉 「큰모르」「큰몰」(大村大邑)의 寫音인 것이다……中略……

41) 金三守, 上揭書 57~58面 參考.
42) 金三守, 上揭書 305面 參考.
43) 張設鎭, 「水產業協同組合經營論」 1面 參考.

「모루」「모르」는 실상 「ᄆᆞ을」「모을」의 原始型으로 日本語 「おら」와 같이 群聚의 意에서 나온 것임은 再言을 要치 않거니와 原始集會所의 轉形이요 後身인 官衙를 國語에 또한 「ᄆᆞ을」이라 하여 官府字와 官寺字를 모다 「ᄆᆞ을」이라 訓讀하여 왔고 官衙에 가는 것이라든지 官廳에 出勤하는 것을 「ᄃᆞ을」에 간다고 하였다」[44]고 하므로써 村落은 古來로 群聚→모움→共同組織→共同體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農業과 漁業의 가장 重要한 勞動形態는 共同勞動임은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自然의 支配度가 한결 큰 漁業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그러한 共同勞動은 항상 村落을 單位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니 이를테면 "두레"나 "품앗이"는 말 할 것도 없고, 後에 말 할 것과 같이 漁村에 있어서의 共同捕漁와 採藻도 亦是村落單位로 共同勞動의 形態로 이루어 졌으며 오늘날에도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그들의 가장 重要한 物質生活의 土臺인 農耕이나 漁撈時의 共同勞動을 通해서 村落이 共同組織化되어 하나의 局地的 小宇宙로서 自己完了的인 再生產構造였음을 示唆해주고 있다 하겠다. 셋째로 이러한 事實은 다음의 文獻的 資料에서도 엿볼 수 있으니 魏志, 辰韓條에는 「相呼爲徒」라 하였고, 同志 濊條에는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忘相涉入 (中略)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各之爲責禍」라 하여 村落의 共同組織化를 말하고 있으니, 亦是 魏志에는 「其俗小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라 하여 비록 數個以上의 邑落이 結合·聯盟하여 部族社會를 이루고 거기에 主帥가 있었다고 하드래도 能히 制御하지 못하고 生活의 主體는 항상 村落으로서 各邑落과 邑落사이에는 空隙이 介在하여 各村落은 大體로 「洞口」라는 좁은 (이는 物理的 크기를 뜻하지 않음) 通路에 의하여 外部와 接觸을 가질 뿐 나머지 部分은 항상 外部와 杜絕 封鎖되어 있었는바 이는 「洞口」라는 用語가 「封鎖」라는 語彙의 相對語로 쓰인다는 點에서도 알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줄곧 韓國社會의 共同體的 性格을 考察해 왔거니와 우리들의 論議의 焦點이 自然 土地의 利用形態를 耕地로 하는 農村社會에 맞춰지는 느낌이 없지 않았었다. 그러면 本稿의 主題인 漁村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結論을 먼저 말한다면 農村의 경우에도 事情은 大同小異하리라 推斷하거니와, 우리들이 이렇게 推斷하는 까닭은, 1)漁業의 勞動場所요 生產의 터인 漁場은 그 自然的 技術的 事情에 依하여 耕地보다도 훨씬 個別化가 困難하며 同時에 漁業엔 共同勞動이 한층 要求된다는 點, 2)韓國의 漁村은 他國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本來 農主漁從의 生業形態가 오래 繼續되다가 近代化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漁主農從, 乃至 純漁業村落이 發展했던 것이며 反對의 경우는 想定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漁業生產은 本是 副食物을 提供하는데 不過하며 또한 漁撈技術의 低位生產性, 漁業生產의 不規律性=不要定性및 漁業生產物의 交換經濟的 性格등은 自給自足經濟를 前提로 하는 한 漁業에 專業化 할 수는 없고 항상 農業의 補完物로서만 存立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漁業에의 專業化는 漁撈技術의 發達과 漁業生產을 위요하는 全體國民經濟構造와 貨幣商品經濟的 體制에로 再編成됨을 前提로 한다. 이렇게 볼 때 韓國의 漁村은 本來 半農半漁의 兼業漁村으로서 出發하였고 또한 그러한 生業形態는 오래도록 繼續되었으므로 農業과 農村의 制度는 이를테면 收租單位인 「結負制」의 漁業에의 共用과 같이 그대로 漁村에도 適用되었다고 하는 點에 根據하는 것이다.

구태여 漁·農村의 差異點을 골라낸다면 純粹한 漁村의 경우에는 그들의 共同體的 性格

44) 李丙燾, 古代南堂考(서울大學校論文集 第一輯 1954), 7面 參考,

은 훨씬 强度가 높았다고 하는데 不過하니 漁村에 있어서 强度가 높은 까닭은 첫째로 漁業은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自然條件의 支配度가 크며, 둘째로 漁業에 있어서의 勞動의 對象이고 資源이며 同時에 勞動의 場所인 漁場은 그 特殊性으로 말미암아[45] 不可分割的인 것이어서 共同稼場으로서의 性格이 强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漁業이라는 産業이 갖는 技術的 社會經濟的 性格으로 말미암아 近代自然科學的 技術의 導入이 완만하고 따라서 社會的 分業의 發達이 不振하여 漁村社會의 分解가 商工業의 立地인 都市는 勿論 農業의 立地인 農村보다도 늦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原始社會를 包含하는 前近代社會의 韓國漁村이 村落共同體로서 機能했을 것임은 설령 漁村社會의 共同體的 性格을 直接的으로 立證할 만한 文獻的 資料가 發見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能히 推定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우리들의 假說은 後述하는바와 같이 現存하는 漁村共同體의 遺制가 十分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우리들이 提起한 두번째 疑問, 즉 先人들이 開發한 水界 乃至 漁場은 共有로서 團體的으로 支配 管理되었는가, 不然이면 私有로서 個別的으로 利用 管理되었는가 하는 問題에 대하여 解明해 보기로 하자. 이 問題에 관한 우리들의 結論的 見解를 먼저 말한다면, 韓國漁村의 漁場은 共同體的으로 所有되어 歷史의 흐름과 더불어 가지가지의 所有形態를 取하면서 共同體에 의하여 支配·管理되었을 것이나 一般的으로 歷史의 初期에 있어서는 共同體成員의 共同所有(das Gemeineigentum), 乃至 總有(das Gesamteigentum)였다가 時間의 흐름에 따른 共同體의 歷史的 形態의 變遷에 발맞추어 共同體的私所有(das gemeinschaftliche privateigentum)에로 바뀌지지마는 各漁村의 位置 및 自然的 諸與件과 그러한 村落自體의 主體的 諸條件에 따라 오늘날에 이르러선 많은 類差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所有라는 것은 特定한 支配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關係란 人間의 頭腦속에서만 存在하는 主觀的인 關係가 아니라 主觀으로부터 獨立的으로 實在하는 現實的인 關係인 것이다. 그것은 그 自身 客觀的 存在인 人間이 他의 客觀的 存在(物 혹은 人間)에 關係하는 그러한 關係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關係一般은 아직 所有는 아니다. 이러한 關係의 特殊境遇 즉 人間이 物(또는 物이라 着做되는 人間)에 대하여 歷史的으로 制約받으면서도 자기의 것으로서 自己에게 所屬하는 것으로서 어떻게도 利用할 수 있다고 하는 關係에 설 때 이러한 支配關係가 바로 所有인 것이다. 이와같이 所有란 關係이며 特定한 支配關係이기 때문에 이 關係의 兩極에는 支配하는 者(主體)와 支配받는 者(客體)가 存在하게 되는 것이다.[46] 그러면 이와같은 支配關係는 무엇에 根據하여 發生하는 것일까? 오늘날과 같은 法秩序가 發達한 文明社會에 있어서는 그러한 支配는 所有權으로서 法制化되어 使用, 收益, 處分등 諸權限을 原理的으로 內包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法秩序上에서는 그러한 權限의 源泉 즉 權源은 法自體에 求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歷史的, 發展的으로 볼 때는 諸權限의 並存關係로 부터 自己의 것으로서의 客體에 대한 支配의 排他性의 發展으로서 보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또한 權源은 그 排他性을 發生케 하는 歷史的으로 制約된 具體的인 一定한 勞動(現實的인 占取——具體的으론 戰爭·占領등을 通해서 이루어진다——나 開墾과 같은 生産的 勞動)인 것이다. 勞動이란 人間을 人間답게 만들며 人間으로서의 自己를 存續시키며 發展시킨 感性的 活動인바 그것이 集團的으로 行하여 지고

45) 漁場의 特性은 一般的으로 自然的 所與性, 制限性, 流動變易性, 相互聯關性 및 多岐的 利用性등을 들 수 있다.

46) 太口秀通, 「共同體と 英雄時代」, 5~6面 參考.

있는가 個別的으로 이루어 지는가에 따라 이 勞動을 基礎로 해서 實現된 所有形態가 共同所有가 되는가 혹은 私的 所有가 되든가 하는 것임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原始社會에 있어서는 集團勞動이 生產的 勞動의 基本形態라 推定되나 集團의 成員은 個別的 勞動에 의해서 裝飾品·衣服 勞動用具 家畜등을 私的으로 所有해 갔을 것이다. 그러나 土地(漁場)所有에 대해서는 어떤 民族의 原始社會에 있어서도 그 一定段階에 이르기까지 宅地만을 除外하고선 共同所有가 支配的이었음은 推定하기에 어렵지 않는 것인바 歷史時代初期에 있어서의 私的 土地所有에 대한 共同體規制나 公有地의 存在는 土地(漁場)所有의 本源的 形態가 共同體成員의 共同所有였을 것임을 逆推하기에 足한 것이라 하겠다. 人間이 勞動하며 生產하는 集團으로서 出發한 限 勞動의 對象이며 地盤인 土地에 대한 支配關係는 共同所有로서 出發했으며 所有의 屬性인 排他性은 集團에 의한 他集部에 대한 排他性으로서 出發했을 일도 또한 확실하다 하겠다.[47]

그러면 이와같이 人間이 始初에 集團的으로 勞動하며 生產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關하여는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當時의 낮은 生產力 때문인 것이다. 비록 人間이 工作人(Homo Faber)으로서 出發했다고 하드라도 原始社會에 있어서의 低生產力은 孤立的인 人間의 存立을 不可能케 하였던 것이다. 아니 보다 正確하게 말하면 個別的 人間의 觀念마저도 낳지 못하였던 것이다. 以上을 圖式化해 본다면 低生產力→共同勞動→集團性强要→勞動用具와 勞動對象의 共同所有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低生產力이야말로 共同所有의 決定的 原因이라면 韓國漁業의 低生產力은 他의 어느 產業部門에 견줄 수 없으리 만큼 低水準에 머물러 있었고 더구나 그것도 19C 末 日人들에 의한 韓海通漁가 本格化될 때 까지 거의 化石처럼 舊態依然했음을 상기한다면 韓國漁業의 共同性은 推斷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이다. 이제 韓國漁業의 共同性을 立證할만한 몇가지 事實들을 調査해 보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오늘날 韓國漁村에 그대로 남아있는 地先水面의 共同利用에 관한 慣行이다. 다음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韓國沿岸에 散在하는 總 3,111個 自然部落中 그 70%에 相當하는 2,105個 部落이 「漁村契」[48]라는 協同體로 構成되어 그러한 「漁村契」가 主體가 되어 地先水面을 共同稼場으로 共同經營하고 있거니와 2,105個라는 部落은 沿岸에 位置하면서 現實的으로 漁業에 그들의 生計의 어느 程度의 部分을 依存하고 있는 部落이라면 거의 全部를 망라하고 있는 數字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漁村契란 1963年 7月 15日 法律 136號로서 發布된 產業法 第10條

沿岸의 自然部落과 漁村契

〈表 1〉 (1967. 12.)

	京畿	忠南	全北	全西	全東	慶南	慶北	江原	濟州	計
自然部落(A)	262	272	144	628	626	749	218	92	120	3,111
漁村契(B)	130	161	49	487	473	450	169	87	99	2,105
B/A (%)	49	59	34	77	76	60	94	82	66	67

資料：水協中央會, 「1967年度 漁村契 實態調査」 上卷

47) 太口秀通, 上揭書 6~7面 參考.

48) 여기에서 말하는 「漁村契」란 「水產業法」 第10條 1, 2項 및 「同施行令」 15條에 의하여 設立된 漁村契를 말하는 것으로 이른바 農業協同組合의 「里洞組合」에 相當하는 里·洞의 水產業協同組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여기에 「契」라는 會緊의 名稱을 使用하였는가? 그것은 古來로 存在하는 漁網契, 船具契, 罹契등의 漁村의 契의 慣行을 尊重한데서 붙여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事實을 契共同體라는 學說과 아울러 吟味한다면 興味있는 事實이 아닐 수 없다.

1·2項및 同法施行令 第15條에 依據해서 設立된 이른바 水產協同組合의 里洞組合에 相當한 것으로 이「漁村契」自體를 가지고 漁村共同體라 보는데는 無理가 없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 事由와 아울러「漁村契」自體의 立法化 過程을 살펴본다면「漁村契」는 漁村共同體의 後身 乃至 그 自體로서 共同漁業의 主體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近代的 漁業制度가 確立된 것은 1908年(隆熙 2年) 法律 第29條로서 發布되어 1909年 2月 27日부터 實施케 된「舊韓國漁業法」이다. 이 法은 本文 14個條로 된 韓國最初의 獨立된 漁業法이라는데 意義가 있는 것으로서 이 法의 內容은 (1)漁業制度의 確立, (2)漁業權의 確立, (3)漁業의 制度, 禁止, 紛爭의 裁定을 위한 法的 措置등으로 되어 있다. 이 中 우리들이 本硏究에서 重視해야 할 點은 漁業權의 確立인바 同法은 從來의 沿岸漁場에 있어서의 村落共同體的 所有, 經營樣式을 漁業權이라는 形式으로 適法化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런데 이 法은 그 成立過程에 있어서 1901年(明治 34年)에 制定된「舊明治漁業法」의 影響을 크게 받고 있는바[49]「舊明治漁業法」의 基本原則이「地先水面의 專用및 漁業의 慣行을 可及的 維持하고……(中略)……慣行을 깨뜨리지 않는다」[50]는데 있었음을 勘案할 때 이러한 根本立法趣旨를 이어받은 舊韓國漁業法이 沿岸漁村에 있어서의 古來의 生產關係를 그대로 溫存시킨채 漁業權이라는 形式으로 村落共同體的 所有 經營樣式을 合法化시켰을 窺知하기에 어렵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關係는 그 後 日人들에 의하여 制定·實施를 본바 있는「漁業會」(1911年 6月) 및,「朝鮮漁業會」(1929年 1月)에 의해서도 如前히 維持되었는바, 沿岸漁村의 地先水面의 專用에 관하여는 同令 第三條에서「水面을 專用하여 漁業을 營爲코자 하는 權利를 얻고자 하는 者는 朝鮮總督府의 免許를 얻어야 한다. 前項의 免許는 漁村의 經營 또는 維持를 위해서 必要한 경우를 除外하곤 이를 許與치 않는다」[51](傍點 引用者)고 規定하므로써 沿岸漁村의 古來의 入會關係를 더욱 明白히 固定化시키므로써 그러한 入會關係를 基礎로해서 構成되어 있는 生產關係를 如前히 溫存시켰던 것이다. 上記 漁業令은 解放, 政府樹立, 韓國動亂後 1953年 9月 韓國「水產業法」이 制定·公布될 때 까지 繼續 有效하였으며 그 까닭은 1945年 10月에 發布된 軍政法令 第11號에 의하여「朝鮮漁業令」과 그 附屬法令은 繼續 有效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過程을 거친 연후 1953年 9月9日 法律 第295號로서 公布되어 그 해 12月 8日부터 施行되었다. 그러면 解放後 우리의 最初의 水產法인 1953年의 水產法에선 이 問題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기에서도 朝鮮漁業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그 地域漁民의 共同利益을 위하여 共同經營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區域內 住所를 가지는 漁民이 組織하는 法人(水產業法 第三章四項)이 第一順位로 漁業權을 取得하도록 되어 있다.「이것은 漁撈의 總有化를 意慾한 것이다」[52] 이 水產業法은 그후 三回에에 걸친 改正끝에 1963년 7月 15日 法律 第135號로서 發布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水產業法」이다. 그러면 現行法인「韓國水產業法」에 있어선 專用漁業權制度는 어떻게 되었을까? 本法 第8條에서 從來의 專用漁業權을 共同漁業權으로 改稱하고 共同漁業權의 事實上의 所有 經營 收益者를 各地先水面을 包容하고 있는 沿岸漁村民에 의해서 組織된「漁村契」로 하고 있는 것이다.[53] 더욱 우리들은 現行水產業法에 있어선 漁業經營의 共

49) 拙稿「韓國漁業의 資本制化 過程에 있어서의 沈滯性에 관한 硏究 ——全南西南海岸地方에 現存하는 共同採藻制를 中心으로——」全南大論文集 第11輯所收 129~132面 參考.
50) 潮見俊雄,「日本に 於ける 漁業法の 歷史と 性格」, 33面 參考.
51) 朝鮮總督府 法令集(大正 5年版), 第16號(產業) 88面 參考.
52) 高承濟「韓國經濟論」95面.
53) 韓國水產業法 第10條및 同法 施行令 第15條 參考.

同體 乃至 村落共同體的 性格을 印象的으로 强하게 받게 된다. 그것은 現行水產業法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共同漁業」이나 「漁村契」와 같은 複古的(?) 名稱에 크게 연유하는 것 같다. 「契」字는 李朝開國 272年에 作製된 「漢城府北部戶籍帳」의 用例, 즉 「阿耳古介契九戶 行禧宮契十七戶, 加佐洞三十八戶, 水色里契四十四戶, 城山里契五十七戶, 細矯里契二十三戶 合掌里契八十九戶, 望遠亭契百四十二戶, 弘濟院契十六戶, 汝義島契四十四戶, (傍點 引用者)등 用例에서 보는바와 같이 里洞 즉 村落을 契라고도 稱하였던바 거기에 「洞契」를 重用하거나 「契」를 單用하였던 것이다.[54] 이와같이 契는 韓國 古有의 各種 會聚에 관한 名稱으로서 上述한바와 같이 契를 共同體 그것으로 보는가하면(金三守) 契를 共同體的 生產關係로 보는 이(金柄夏外)가 또한 많은 것인바, 水產業協同組合의 基本組織體인 里洞組合에 漁村契라는 名稱을 붙인 것은 沿岸漁村에 在來로 溫存하는 各種 共同體的 性格의 强靱함을 反證하고 있다 하겠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들은 沿岸漁業을 規律하는 各國의 立法例를 살펴 본다면 우리 水產業法의 前近代性(?) 乃至 共同體的 慣行의 溫存이라는 性格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英國에서는 領域內의 水面을 海洋, 河口, 海潮의 干滿이 있는 河川등의 Tidal waters 와 海潮의 影響이 없는 內水面, 즉 Non tidal waters 로 나누고 Tidal waters 에 대하여서는 原則으로 漁業自由의 原則이 認證되어 이를 Public fisheries 乃至 Common fisheries 라 불러 英國國民 모두가 漁撈를 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漁業權이 아니라 漁業自由 原則의 反射에 不過한 것이다. 다만 Tidal waters 라고 하드라도 Magna calta 以前에는 國王이 漁業權의 個人에의 獨占을 認正하고 있었으나 Magna calta 는 이를 禁止했던 것이다. Non tidal waters 는 水面의 土地所有者, 또는 第3者가 Several fisheries 라 불리우는 漁業權을 認證하고 있는데, 이 漁業權의 性質은 水面의 敷地인 土地의 收益이며 漁業을 行하는 權利는 土地의 權利(To right to solum)에서 發生하는 것으로서 原則으로 水面의 土地所有權에 隨伴하는 것이다.[55]

프러시아의 1916年 漁業法(Das Fishereigesetz vom 11, mai 1916)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同法은 領土主權이 미치는 水面을 沿海水面(Küstengewässer)과 內水面(Binnengewässer)으로 나눠, 沿海水面中 所有權이 存在하지 않는 水面에 있어서는 모든 獨逸國民의 漁撈의 自由를 認證하고 있는 反面, 沿海水面中 所有權이 存在하는 水面과 內水面에 대해서 水面의 所有權者가 漁業權을 가짐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프러시아에 있어서도 英國에 있어서와 같이 沿海面에 있어서는 原則으로 漁業自由의 原則이 認證되고 있으며, 다만 所有權이 存在하는 沿海水面및 內水面에 대해서만이 漁業權이 認證되고 있는데[56] 漁業權도 原則으로 水面의 土地所有權의 效果로서 보고 있는 點이 우리나라의 漁業權이 沿海에 널리 認證되어 있고 또한 그것은 水面의 土地所有權과는 別個의 것으로 觀念되어 있는 것과 對照的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外國의 立法例는 漸次 個人 혹은 部落共同體에의 漁業權의 獨占을 解除하고 萬人의 自由漁業에 開放하고 있는 傾向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漁業權制度를 强化하고 있는 形便에 있으니 그것은 위에서 누누히 말한바와 같이 韓國 沿岸漁村의 特殊한 社會構造에 基因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漁村契는 그 立法化過程에서 벌써 沿岸漁村에 있어서의 地先水面의 專用과 共同經營을 위한 生產協同體로서 誕生한 것이며 이로 미루어 볼 때 韓國에 있어선 最初의 近代的인 漁業法이라 할 수 있는

54) 朝鮮總督府, 「農山漁村に於ける契」, 1~2面 參考.
55) Coulson and Forbes, Law of waters, 1924.
56) A. Boorn, Das preussische Fischereigesetz vom 11. Mai 1916, 1928.

「舊韓國漁業法」이 成立하기 훨씬 以前에 沿岸漁村에 있어서는 漁業의 共同經營이 一般的이었고 이러한 慣行은 새로이 制定 乃至 改正되는 立法過程에 있어서 그대로 溫存되지 않을 수 없을만큼 强하게 漁村社會를 支配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1) 1965年 現在 組織되어 있는 2,089 漁業契中 새로운 事業을 經營하고 있는 漁村契는 겨우 2%에 該當하는 40 餘個處뿐이고 나머지 漁村契는 從來의 慣行에 의하여 部落이 管理하고 있던 共同漁場을 形式上 引受·管理하고 있는[57] 實情이라는 點, 2) 筆者의 다음 實態調査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各漁村은 漁村契形成 以前부터 共同漁業을 經營하고 있다는 點등에서 잘 立證되고 있다.

筆者는 本硏究를 위하여 全國의 各沿岸을 包括하는 60個 漁村을 對象으로 設問하였던바 그중 設問에 應해준 47個 漁村가운데 「위의 共同漁業은 (1) 漁村契 形成 以前부터 部落的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2) 漁村契 形成後 비로소 이루어 지고 있다.」라는 設問에 대하여 漁村契 形成後 비로소 이루어 졌다고 答해 온 마을은 慶尙南道 固城郡 下一面 東禾里 東禾郡部落 뿐이며 無答이 6個部落, 나머지 40個 部落은 漁村契 形成 以前부터 이루어 지고 있었다고 答해 왔음을 보드라도 漁村契는 古來의 村落共同體的 共同經營을 踏襲하고 있는 現存하는 漁村共同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와같은 沿岸漁業의 共同經營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形成되었을까. 마지막으로 이 問題에 관하여 살펴 본 後에 本節을 끝맺기로 하자. 언제부터 形成되었을까 하는 問題에 관한 解答을 우리들은 文獻的 資料에서 直接的으로 立證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미 여러차례 言及해 온바와 같이 韓國沿岸의 漁村이 共同體로 編制되어 그들의 生產ㅡ消費生活을 共同經營해 왔다는 우리들의 假定(主張)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各個의 漁業共同體는 當該 村落의 形成과 때를 같이 해서 成立했을 것이며 韓國漁業의 共同經營은 韓國民族이 水界를 開發하기 시작한 上古에로 遡及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言及한바와 같이 沿海村落을 그 生業形態에 따라 類型化해 본다면 純農(A), 主農從漁(B), 半農半漁(C), 純漁(D)[58]로 四分되는데 그중 漁村의 範疇에 드는 것은 (B) (C) (D)의 세가지이다. 漁村을 그 歷史的 發展段階에서 볼 때 純農(A)→主農從漁(B)→半農半漁(C)→純漁(D)의 順序로 開發되거니와, 私見에 의하면 아직 漁村이 主農從漁의 段階에 머물러 있을 때는 漁業의 共同經營은 發生하나 그것은 農業共同體에 埋沒되어 그 一環으로서 營爲되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들이 問題視하는 漁業共同體는 韓國沿海의 村落에 半農半漁→純漁의 生業形態가 普遍化된 時期에 비롯하지 않나 보여진다.

그러면 韓國沿海의 村落에 半農半漁→純漁의 生業形態가 普遍化된 時期는 언제인가? 硏究史의 現段階로선 그 時期를 確定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 믿어진다. 다만 하나의 假說을 提起해 본다면 그것은 高麗朝, 特히 그 中期 以後에 들어서서 封建制度가 確立된 後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들이 이와같은 假說을 펴는 論據를 살펴보자. 沿海村落이 그들의 生產을 農業에로부터 漁業으로 차츰 力點을 바꿔가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①社會的 分業의 進展및 人口의 增加에 따른 水產物에 대한 需要增加, ②그것을 뒷받침하는 漁撈技術의 發達, ③封建官僚에 의한 收奪의 强化와 그에 따른 脫農民化의 進展→落島에의 移住·開拓등에 의하여 기왕에 農主漁從의 形態로 漁業을 經營하던 沿海村落은 半漁半農, 혹은 漁主農從, 나아가선

57) 水協中央會, 漁民 20號 8面 參考.
58) 山岡樂市, 「漁村社會學の 硏究」 6面 參考.

純漁의 形態로 바뀌어간다.

그러면 高麗朝, 特히 그 中期 以後에 上記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A.D. 976年, 田柴科의 實施에서 보여 지는바와 같이 中央集權的 封建體制를 整備해가는 高麗는 특히 11C 初부터 12C 初에 걸쳐 政治, 經濟, 文化등 諸部門의 發達을 보게 되었다. 그에 따라 비록 手工業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드라도 官營·私營·寺院工業의 發展을 보게 되었고 商業에 있어서도 都市와 地方에 定期開市하는 場이 서게되어 商工業分野에 있어서 漸次 獨自的인 經營狀態가 形成되어 가고 있었다.[59] 水產物은 (庶民大衆의 가장 重要한 副食인) 對內外 商去來의 主要對象品의 하나였으니, 特히 高麗產 水產物은 中國에서 높이 評價되어 珍重視되었음은 많은 記錄이 傳해주고 있다. 또한 當時의 人口가 얼마나 되는지 正確한 統計는 勿論 알 길이 없으나 李朝의 戶口에서 推算되는 高麗末(AD 1392)의 人口는 約 1,000萬名[60] 程度라니 꽤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人口의 海產物에 대한 기호는 相當했던 모양이니 이를테면 高麗時代의 漁業相을 가장 잘 傳해주는 「高麗圖經」에는 這間의 事情을 이렇게 傳하고 있다. 「國俗 有羊豕非王公貴人不食 細民多食海品 故有鰕鰒蚌珠田蝦文蛤紫蟹螺房龜脚 以至海藻品布 貴賤通嗜 多勝食氣 然而臭腥味鹹 久亦可壓也 海人海至潮落 可舟島艇而捕魚 然不善結網 但以疏布漉之 用力多而見功寡 惟螺蛤之屬 潮落不能去 人援拾 盡力取之 不竭也」[61]라고. 이와같이 많은 水產物의 需要充足을 위해서는 自家消費的인 主農從漁의 經營形態로선 不足했으며 적어도 半農半漁式, 나아가선 主漁從農이나 純漁의 經營形態가 마땅히 發生했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漁撈技術의 向上이 高麗朝에 들어와서 이룩되었는가? 우리는 高麗時代의 漁業技術이 그 以前에 比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 記錄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 事實에서 高麗의 漁業技術이 相當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顯宗七年(AD 1016) 五月乙巳 宮人金氏 生王者賜名欽 仍賜延慶院金銀器 匹殘 田壓奴婢 塩盆 漁梁」[62]의 記錄에서 보는 것처럼 漁梁이 下賜의 對象이 있는데, 漁梁漁業은 比較的 生產性이 높은 定置漁業의 一種으로서 高麗時代의 代表的 漁業으로 發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로 高麗는 太祖의 開國當初부터 活發한 海上活動을 展開해 왔거니와 그에 따른 造船術의 發達은 特記할만 하다. 高麗의 造船術은 元에서도 높이 評價되고 있었으니, 즉 元 至元年間의 識者 王惲의 「汎海小錄」中 九州平戶島(昆蘭)에 남아서 暴風을 받은 東征軍의 모습을 叙述한 一節에 「大小船艦 多爲波浪揃觸而碎 唯句麗船堅得全云云」이라 쓰고 있으며, 또한 第二次 東征後 十一年, 즉 忠烈王十八年 八月에 王世子가 元에 가서 世祖를 보았을 때에 丁右丞이 元祖에게 「江南戰船 大則大矣 遇觸則毁 此前所以失利也 如使高麗造船 而再征之日本可取 云云」이라 奏聞한 말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 이와같이 高麗의 發達된 造船術은 漁業과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는 것이니 이는 反射的으로 漁業技術의 向上을 立證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세째로 封建官僚의 收奪强化와 脫農民化의 增進에 따른 落島 深海漁村의 開拓은 구태여 文獻을 引用치 않더라도 高麗中葉 以後 저 많은 國有地의 私占化 現象을 想起만 하여도 足할 것이다. 이러한 脫農民化 現象은 增加된 人口와 함께 하나의 프론티어로서 落島·深海

59) 劉敎聖, 「韓國商業史」(韓國文化史大系 Ⅱ) 1024.
60) 全哲, 「韓國の人口と經濟」 7面 參考.
61) 高麗圖卷, 第23卷, 雜俗二漁.
62) 高麗史, 卷 4, 世家卷 第 8, 文字 2.

漁村의 新開拓과 同時에 旣開發된 漁場의 集約化를 要求하였을 것이다.

以上과 같이 高麗朝에 들어와서 沿海村落의 經濟構造가 主農從漁로부터 半漁半農→主漁從農→純漁에로 바뀌져오므로써 이러한 經濟構造 위에 선 漁村은 지금까지의 農業(村)共同體에 準據해오던 漁業(村)共同體로 再編成되었고, 一段 編成을 마친 漁業共同體는 漁業이 本質的으로 지니고 있는 共同性으로 말미암아 더욱 줄기차게 存立할 수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된다.

2. 漁業共同體의 存立形態

——黑山島의 미역 共同採藻制의 경우——

앞에서 우리들은 韓民族의 水界開發이 村落共同體를 主體로 하는 樣態로 이루어 졌으며 地先의 共同漁場을 基盤으로 하는 漁業共同體가 確立된 것은 高麗朝에 들어 와서 封建體制의 確立과 그에 따른 量田및 土地制度의 整備에 뒷 따른 일이 아닌가 推斷하였었다. 그러면 本節에서는 그러한 共同漁業의 經營形態, 바꿔말하면 韓國沿岸漁業의 村落共同體的 經營形態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들은 入會共同漁業의 經營內容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文獻的 資料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文獻과 같은 자칫하면 事實의 歪曲의 念慮마저 지니고 있는 二次的인 史實보다도 훨씬 信憑性 있는 遺制를 우리들은 踏査·發見하여 여기 紹介하고자 한다. 筆者가 그간 數次의 漁村踏査에서 밝혀 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漁村中漁業共同體的 遺制가 가장 잘 保存되어 있는 곳은 全羅南道 新安郡의 黑山島 一圓의 28個 마을이었다. 이곳에서는 入會漁業의 經營이 遺制라기 보단 오히려 現行制度로서 原狀(?)에 가까웁게 잘 營爲되고 있다. 이 중 우리들이 現地를 踏査한바 있는 8個 部落의 事例를 中心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黑山島의 位置 및 略史

黑山島는 木浦西南方 58 mile 地點에 位置한 大黑山島를 위요하고 있는 大小 55個의 島嶼로써 形成된 群島이다. 東經 125°25′와 北緯 34°4′에 자리 잡고 있는 大黑山島, 그 東方 2 mile 地點에 永山島가 있고 北東方 4 mile 에 大茫島가 있으며, 西方 1 mile 에 長島, 亦是 西方 14 mile 에 紅島가 있다. 大黑山島에서 南方 18 mile 에 上中下 苔島가 있으며 44 mile 地點에 一名 可居島라 불리우는 小黑山島가 있다. 이들 大小 島嶼가 옹유하고 있는 自然部落은 26個村에 達하며 1967年末 現在 12,582名의 人口가 살고 있다. 黑山島의 入住年代는 正確히 밝힐 수 없으나 全羅南道史 編纂委員會가 發刊한 「全羅南道史」 및 黑山面이 發刊한 「管內狀況」등에 의하면 百濟및 新羅時代에는 中國과 通涉하던 要地로서[63] 月山郡이라는 獨立된 郡을 이루고 있었다 한다. 高麗와 李朝初에는 어떤 行政區域에 屬했었는지 未詳하나 當時에도 中國과의 通涉의 要지로서의 구실은 如前했던 모양이니, 高麗 第十七代 仁宗 元年(A.D. 1123) 宋使 路允迪에 隨從하여 高麗에 와서 首都 開城에 約一個日間을 머무루면서 見聞한 것 中에서 主로 宋과 다른 點을 收錄하여 有名한 「高麗圖經」(原名 宣和奉使高麗圖經)을 내놓은 徐兢 一行이 麗朝한 航路도 亦是 宋에서 出發한 후 半島를 向하여 黃海의 南部를 건너 黑山島에 이르고 여기에서 西岸을 北上하여 永宗島를 지나 鹽河를 빠져나와 禮成江에 들어 갔었다[64]고 하는 史實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하겠다. 李朝에 들어 와서도 亦

63) 全羅南道史編纂委員會, 「全羅南道史」 202面 參考.
64) 海軍本部, 「韓國海洋史」 148~149面 參考.

是 黑山島에서는 濟州島를 비롯한 西南海岸과 나아가선 中國大陸과의 사이에 船便의 來往이 있었음을 推斷 할 수 있으니, 「世宗實錄 卷 第百四」의 다음과 같은 記錄이 이를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丙戌諭全羅南道觀察使李孟畛曾聞濟州近地有白島黑島黑山等島如此之島濟州近地有幾處若多有地則公私船於諸島並皆來往乎……下略」[65]

그러나 壬辰倭亂時에 倭寇의 來侵으로 一時 廢郡되었다가 李朝 肅宗 2年(A.D. 1673 丙辰)에는 全羅右水使 隷下에 黑山別將을 設置하였고 當時 戶籍은 羅州牧에 屬해 있었다. 西紀 1896年에는 智島郡에 屬했으나 1914年 同郡이 廢郡되자 務安郡에 編入되어 오다가 新年(1969年)들어 務安郡의 島·陸分郡措置에 따라 新安郡에 編入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現住民들의 祖上들은 壬辰倭亂 平靜 後에 附近의 安佐, 都草, 飛禽等地 多島海에서 들어왔을 것임이 確實하므로 빨라도 350餘年前의 일이 아닌가 생각되거니와 이러한 事實은 黑山島에서 가장 오랜 氏族으로 自認하고 있는 昌原黃氏가 黑山에 入島한지 12代로 보고 있음이 그를 傍證하고 있다 하겠다.

2) 黑山島의 經濟構造

다음에는 下記 標本部落을 中心으로 黑山島 一圓의 經濟狀況 一般과 產業構造에 관하여 調査해 보기로 하자. 黑山島의 產業은 水產業이다. 第2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標本部落의 戶當平均耕地面積은 1段步에 不過하며 黑山島 全體의 그것은 3.3段步로서 食糧의 自給率은 平均 15%程度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곳에선 農業은 第二種 兼業에 不過한 形便이다. 따라서 一部 公務員과 黑山島漁業前進基地의 前哨港이 되어 있는 曳里에서 商店과 鐵工所를

調査部落의 經濟狀況을 나타내는 諸指標

〈表 2〉 (1964年末 現在)

項目 / 部落	鎭里一區	鎭里二區	多村里	水里	桃木里	梧里	紅島里一區	紅島里二區	平均
食糧自給率(%)	30	20	10	10	25	25	5	5	15
戶當平均耕地面積(反)	2.2	1.1	0.8	0.9	1.2	1.2	0.3	0.3	1.0
船舶所有戶數※	4/17>21	1/18>19	4/43>47	1/29>30	2/14>16	2/22>24	4/27>31	21	2/24
戶當平均漁獲高(원)	6,740	4,800	8,390	6,930	4,140	7,890	9,420	6,348	6,832
戶當平均採取高(원)	6,710	3,435	8,780	5,116	3,040	4,706	40,050	27,280	12,389

※ 上欄은 動力船, 下欄은 帆船임.

資料는 本調査員이 現地漁組및 部落에서 蒐集 整理한 것임.

經營하고 있는 少數의 商工人을 빼놓은다면 黑山島民은 모두 水產業을 專業으로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면 黑山의 主生業인 水產業의 構造는 어떠한가? 黑山島 漁業의 主宗은 採取漁業이다. 1967年末 現在 黑山島民이 所有하고 있는 船舶總數는 385隻인데 이것은 黑山島 管內의 漁家戶數 1,227戶가 平均 세집이 어울려 한 隻의 배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이며, 「배 없는 漁民」이 胎半이라는 事實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의 배마저 動力船은 겨우 14.5%에 相當하는 58隻에 不過하며 나머지 327隻(85.5%)은 모두 無動力船이다. 한편 이들 漁船의 톤級別 構成比를 보면 5톤 未滿의 小型 船舶은 88%를 능가하는 339

65) 國史編纂委員會, 「李朝實錄」, 第4卷, 549面 參考.

隻이며 20톤 以上의 船舶은 한 隻에 不過하여 黑山島 漁業은 原始的이고 後進的인 性格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漁業에 있어서의 該心的 生産手段인 漁船勢力의 後進性과 零細性은 그대로 管內 水産業高에 잘 反映되어 있다.

1964年度의 黑山島의 水産生産高를 魚類와 海藻類로 分類하여 比較하면 魚類는 896餘萬원이었음에 反하여 海藻類 其他는 1,223餘萬원으로서[66] 全國 平均과는 正反對의 構成比를 形成하고 있다.

黑山島漁業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採取漁業(第一種 共同漁業權) 中心의 原始的 性格은 時間이 흘러도 조금도 改善되지 않은채 1967年의 水産生産高에도 그대로 잘 反映되어 있으니 即 1967年의 水産生産高를 分析해 보면 黑山島 管內 總生産高 8,258㎏中 魚類의 生産은 3,817㎏ 이었음에 反하여 海藻類와 其他 水産物이 約 60%에 相當하는 4,451㎏ 이었다고[67] 하는 點에서 잘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시 魚類自體의 重量은 海藻類에 比하여 무거우며 漁獲高에는 黑山島漁業協同組合이 관장하는 海區內의 것이므로 그 中엔 外地船舶의 生産高가 包含되어 있다는 點등을 아울러 생각한다면 黑山島 漁業의 原始的 採取漁業에의 偏重狀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採取漁業 中心이라고 하는 漁業의 原始的 性格은 우리들의 8個 標本部落에서도 매 한가지 였으니, 먼저 漁業勢力의 標徵이라 할 수 있는 漁船의 構成比를 볼 때 8個 漁村이 所有하고 있는 漁船의 總數는 127隻인데 그 중 動力船은 19%에 지나지 않은 24隻임에 反하여 無動力船은 103隻(81%)으로서 黑山島 全體 平均보다는 若干의 改善相을 보이지마는 오히려 漁家平均 漁船保有隻數는 0.25隻, 즉 네집마다 어울려 한 隻의 배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더욱 甚한 零細性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漁業勢力의 後進性은 그대로 漁業生産에 反映되어 1964年 一年간의 戶當 平均 水産生産高를 魚類와 海藻類(其他 水産物包含)로 大分해 보면 8個 標本部落의 平均이 魚類의 生産高는 6,832원이었음에 反하여 海藻類의 採取에서 얻은 收入은 12,389원으로 꼭 2倍에 達하고 있는 形便이다. 이와같은 事情은 오늘날에도 依然하니 즉 1967年의 그것을 比較해 보면 8個部落 總水産生産高가 2,921㎏인데 그 중 魚類는 1,355㎏임에 反하여 海藻類 其他는 1,566㎏으로서 4%나 능가하고 있다.[68] 이러한 事實을 當年 韓國全體의 水産生産高의 構成比 73.7% 對 26.3%[69]와 比較해 보면 黑山島 漁業의 後進性이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겠다. 이것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黑山島 漁業이 後進的이요 零細的임을 말해 주고 있거니와 여기에서 한가지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은 大部分의 漁家(1 : 4의 比率로서)는 漁船없는 漁家로서 아직 獨立生産者로 自立하지 못한채 漁村共同體가 共同所有·管理·利用하는 共同漁場에 生計의 源을 삼고 있다고 하는 點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들의 共同經營相을 살펴 보기로 하자.

66) 黑山面刊, 「管內狀況」 1965.
67) 水協中央會, 「漁村契實態調査」 下卷 98~99面 參考.
68) 水協中央會, 「上揭書」 下卷 98~99面 參考.
69) 水産廳, 水産統計年報 1967. 參照.

〈Summary〉

A Study of the Evolution of Fishing Village Community in Korea

by
Kwang-Soon Park
(Assist. Prof. Chonnam National Univ.)

1. In Korean fishing villages, a living organism has been formed. It is based upon a strong co-operative union, which might be found in co-operative production systems and joint ceremonies. This organism has been transformed to fishing village association (0-Chon Gae), which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ives of fishermen at present.

The following questions should be answered, since they are in our urgent need. What is the origin of this co-operative association? Why does the association play such an important role in fishing villages? Is it serving to the enhancement of fishermen's life condition? And what is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fishing village community and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of today?

Korea has been proud of her abundant gift of nature in marine industry. However, our efforts devoted to the exploitation of the gift have been weak, an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 of fishery was not accomplished. Naturally, our fishing villages have suffered from overpopulation and vicious circle of low productivity and low income.

Then, what is the socio-economic basis of overpopulation in the midst of poverty in Korean fishing villages? In my view, it might have been derived from the common fishery which is based on joint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that are the most important means of production of fishing industry. Therefore, to make a thorough-going analysis on formation, evolution, discomposition,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fishing village community will surely serve for the modernization of Korean fishery.

2. It seems to me that water exploitation began with the settlement of Korean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Even though they were gathering only seaweeds in the coasts, there must have been some orders and systems in their society. The first form of fishery management is believed to take the form of joint undertaking, but it was subsidiary to that agriculture in the coastal villages, In the old age, the fishery was not specialized and not seperated from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 community was not formed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e development of social division of labour,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marine products based on growth of population, however, made fishery an independent

occupation. At the same time, coastal village which had also worked as an agricultural village changed into pure fishing village.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people, chronological estimation of the time when the fishing village community was established, is not possible. But the community is assumed to be founded at the time when pure fishing villages of the seashore were formed. Such a fishing village is presumed to be made in the later period of Korea Dynasty which was provided with feudalistic centeralization of administration. This fishing village community has been evolved in conjun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division of labour, technical improvement, the change of socio-economic systems, and at present the community is transformed to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0-Chon Gae) that is legalized.

3. There few reference books on the management of common fishery. Therefore, we must take the recourse to field survey. As a result, the following three types of operation of common fishery are pointed out.

a. The original form of fishing village community is found in the fishing villages of remote islands, of which the main and important products are seaweeds. Therefore common fishery is operating in the form of the harmonious teamwork of villagers, with the joint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ncluding fishing grounds under the communal restraints, which could be seen in the villages of mediaeval Europe.

b. However, the improvement of fishing technique brought about a change and discompostion to the common fishery. The degree of discomposition of common fishery is closely related to the capital inputs in the fishery. In the coastal marine production, the common fishing system of that fishery has been changed only to a degree that the structure of community is loosened to change. We can see such a relaxed fishery community in the villages of coast, engaging in culture of the seaweeds as a laver.

c. But even in the coastal fishery which needs a large amount of capital is completely deprived of the common fishery system.

Anyway, at present there coexist three types of fishing villages in the coasts and in the near sea of Korea. The forms of fishing village community are also dependent upon the following types of villages.

(1) Fishing villages engaging in seaweed-gathering have almost the original form as the fishing village community.

(2) Fishing villages engaging in culture of seaweeds and fish-raising have the fishing village community changed.

(3) Fishing villages that are being transformed to the capitalistic individual operation through complete discomposition of the fishing village community.